

##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15일

파 주 시 장

### 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

### 2. 개정이유

- 공동주택 등 민간에서 관리·운영중인 자동집하시설에 대하여 시설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신속하게 수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자동집하시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사를 위해 분과위원회 규정 신설(안 제9조제4항)
-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수리·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(안 제12조제2항, 제12조제3항)
- 보조금 지원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하여 위원회를 통해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2조제4항)

### 4. 개정조례안 :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의 입법예고란에 전문 게시

### 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6월 4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Fax 등

다. 기재내용 : 주소·성명·생년월일·연락 전화번호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파주시 자원순환과 환경시설팀)

-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-11 명성빌딩 2층 자원순환과 (우 10932)

- 전화 : 031)940-4771 / Fax 031)940-4739 (전송 후 반드시 전화 확인 필요)

##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

➡ 의견제출자 편의고려, 임의서식임(의견제출 관련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필수 기재내용작성 후, 자유롭게 제출)